



# 「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」 상환유예업무지침

2020. 2.



보건건강위생과

# 2020년 제<del>주특</del>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상환 유예 지침

□ 상환유예 : 747백만원(2020. 2. 11. 기준)

#### □ 지원대상

O 융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존 융자금이 거치기간 중에 있거나 원금 상환 중에 있는 경우, 조건 없이 1년간 만기연장 (융자상환 확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상환이 도래한 경우 상환하여야 함.)

#### □ 유예방법 : 만기연장

O 유예 적용일 : 은행 약정 체결일

O 유예기간 : 1년 범위 내

## O 유예종류

- 상환기간 연장 : 원금 상환중일 경우

- 거치기간 연장 : 원금상환 기일이 미 도래한 경우

#### O 유의사항

-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 (중도 변경 불가)되며, 만기일자만 연장됨.
-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하기 때문에,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.
- 신용보증서 보증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.
- 보증기관 담보 융자자 중 신용불량자, 휴·폐업자 등은 상환유예 되지 않음.

### □ 상환유예 흐름도

① 신청(보증서 ⑦ 사업자 ② 상환유예 I

① 신청(보증서 연장 필요시 먼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 연장)

② 상환유예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상환유예 조치

상환유예 신청결과 통보

#### □ 상환 유예에 따른 비용 부담

- Ο 도(→ 금융기관) : 해당없음
- O 융자자 : 대출액에 대한 월별 이자(상환 및 거치기간 연장)
- ☞ 그 외 중도상환수수료, 보증서 변경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**대출심사 조건에 따른 추가 발생 경비에 대해서는 융자자가 부담.**

#### □ 추진일정

- O 공고 : 2020. 2. 24.(월)
- O 신청·접수기간(융자자 → 금융기관) : 2020. 3. 9.(월) ~ 4. 29.(수)
  - ※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
- O 문의사항
  - 융자 취급은행(제주은행, 농협)
  - 도 보건건강위생과(710 2943)

#### □ 적용기한

- 특별융자지간(2020. 4. 29.)까지